

광주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가단5306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은식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김정완

변론 종결2021. 4. 28.

판결 선고2021. 5.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은 원고에게 53,088,341원 및 그 중 48,968,971원에 대하여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8. 9.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2018. 9. 6. 접수 제1567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1금원 수수

○ 원고는 2016. 7. 18. 피고 B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24%(매월 18일 지급), 변제기 2017. 5. 17.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B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에게 피고 B 소유의 전남 무안군 D 외 1필지(이하 '도리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 위 차용금증서에 따라 2016. 7. 18. 원고의 남편인 F 계좌에서 G 계좌로 1억원(이하 '제1금원'이라 한다)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E리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그 다음날인 2016. 7. 19. E리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제2금원 수수

○ 2016. 9. 5. F 계좌에서 G 계좌로 5,000만 원(이하 '제2금원'이라 한다)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광주 남구 H동 소재 아파트(이하 'H동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피고 B,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H동 아파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16175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금원 수수

○ 원고는 2018. 1. 4. G의 계좌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G 또는 G이 운영하는 I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았다.

1	2018. 1. 4.	967,000
2	2018. 2. 5.	967,000
3	2018. 3. 2.	967,000
4	2018. 4. 4.	967,000

1	2018. 1. 4.	967,000
5	2018. 7. 4.	967,000

라. 피고 B의 재산처분 행위

○ 피고 B은 2018. 9. 6. 사위인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15675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관련 소송 경과

○ 피고 B은, H동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제2금원)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06010). 이 법원은 2019. 12. 11. 제1, 2 금원 및 이 사건 금원 모두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임을 전제로 이 중 제2금원이 일부 변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51,031,547원 및 그중 49,003,700원에 대한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H동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B이 항소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0나50040), 이 법원은 2021. 2. 18.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1다221676)(이하 위 사건을 통틀어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1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변제기한 1년, 이자 연 24%, 이자지급일 매월 4일로

정하여 대여한 대여금 또는 반환을 약정한 투자금인데,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G이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일부 이자만 지급받았고, 이를 변제충당하면 2018. 9. 6. 현재 원리금 합계 53,088,341원(= 원금 48,968,971원1) + 이자 4,119,370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원리금 53,088,341원 및 그중 48,968,97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G에 대한 투자금일 뿐이고,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이 아닙니다.

나. 판단

1)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당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 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2,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G에게 이체된 이 사건 금원이 피고 B에게 대여하거나 피고 B에게 투자한 금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 B 모두 G이 운영하는 장어양식사업에 금원을 투입하여 왔고, 제1, 2금원 및 이 사건 금원도 위 장어양식사업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② 원고는 제1금원을 G에게 송금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원고가 피고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7. 5. 17., 이자 연 24%(매월 18일)로 정하여 대여한다"라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교부받는 한편, 피고 B 소유의 E리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제2금원을 G에게 송금하면서도 피고 B 소유의 H동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이 원고의 G에 대한 제1, 2금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직접 변제책임을 지는 별도의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이 사건 금원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피고 B이 본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를 한 바 없다.

③ 관련 소송에서는 피고 B과 G이 장어양식사업을 동업하였다고 보았으나, 관련 소송에서 G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B을 동업자라고 하는데 어차피 원고나 피고 B이나 똑같은 투자자입니다. 똑같은 투자자이지만 그 안에서 더 깊게 개입한 사람과 단순 투자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이 담보제공해 주어서 원고가 저에게 입금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G은 다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 B에게 피고 B이 투입한 금원에 대하여 투자기간 및 이익배당에 관하여 규정한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④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G의 동업자로 불리기는 하였으나, G과 피고 B이 민법상 조합으로 평가될 만큼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결합관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제1, 2금원과 그 성격이 다른 이 사건 금원에 대해서까지 피고 B이 G과 공동으로 변제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차용금 내지 투자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내지 투자금반환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해림

별지